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9월 16일(수) · 주간 제38호 · 통권 제1484호 ·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9/ 16 통권 148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투명 · 민주경영해야 위기 막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와 전액 증여의 세금비교와 유리·불리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중 직접 이사에 사용된 금액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
- 2020-202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상의 상품권이 아님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당기순소득 2억원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총세금 비교(지방세 제외)>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자 보수 이외 순기여이익과 종합소득세 등	2억 : 1200×6%+3400×15%+4200×24%+6200×35%+5천만원×38%=5660만원	2억 중 1억원은 급여로 근로소득세(각종공제 1500만원 반영)=1200×6%+3400×15%+3900×24%=1518(+)
법인세	없음	2억-1억=1억×10%=1천만원(+)
전액 배당(가정)	없음	1억-1천만원=9천만원(×)
배당액 세금(총액화 가산 11%)	없음	300만원×24%+6200×35%+3490×38%=3568만원(+)
배당세액공제(11%)	없음	9천만원×11%=990만원(-)
합계	5660만원	5096만원(근로소득공제 1500만원 적용×38%=570만원 차이임)
추가이익 한계부담율(소득세)	46.2%	53.4%
분석	① 법인 총이익 3억원(1억원은 창업자 연봉), 순이익 2억원까지는 배당세액공제 11% 적용으로 이중과세가 안되므로, 법인이 유리함(지방세 포함하면 비슷함) ② 법인순이익 2억원 초과부터는 법인세율이 20%인 반면, 배당세액공제는 11%이며 법인이익에 대한 부분이중과세로 법인의 총부담액이 약 7% 높아짐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4 호 / 주간 38호 2020. 9. 16.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당기순소득 2억원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총세금비교(지방세 제외)	표지
긴급시사해설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와 전액 증여의 세금비교와 유리·불리점	2
CEO에세이	투명 · 민주경영해야 위기 막는다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손실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6
	- 한달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월합세금계산서 발급함	
	- 시스템상의 문제로 발급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라면 추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함	7
눈에맞는절세미인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중 직접 이사에 사용된 금액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8
매일절세재무요점	-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10
	- 연금상품 비교	11
직장인Survival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용기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691, 2020.02.28)	13
	-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 · 인적시설과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138, 2020.02.21)	14
세정뉴스와해설	올해 해외계좌 보유한 한국인 '60조원' 신고했다…지난해 比 인원 24%↑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상의 상품권이 아님	12
세무정보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5
	-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18
	- '19년 소득분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완료	21
회계정보	- 2020-202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32
노무정보	-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 재정환율	3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와 전액 증여의 세금비교와 유리 · 불리점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구분	부동산가액이 낮은 경우	부동산가액이 높은 경우
부동산가격	5억원	15억원
전액증여	• 5천만원 공제는 이미 적용받음 • 1억×10%+4억×20%=9천만원(최고한계세율은 20%)	• 5천만원 공제는 이미 적용받음 • 1억×10%+4억×20%+5억×30%+추가 5억×40%=4.4억원(최고한계세율은 40%임)
부담부증여(50%) ① 취득원가(20%가정) ② 부담부증여 양도세	① 2.5억 전세 ② 2.5억 증여 5억×20%=1억원으로 가정 2.5억-0.5억(1억의 50%)=2억 차익 → 1200×6%+3400×15%+4200×24%+6200×35%+5000×38%=5660만원×지방세 1.1배=6226만원 최고한계세율 : 이익율 80%×38%×1.1=33.44%	① 7.5억 전세 ② 7.5억 증여 15억×20%=3억원으로 가정 7.5억원-1.5억(3억원의 50%)=6억원 → 1200×6%+3400×15%+4200×24%+6200×35%+1.5억원×38%+2억원×40%+추가 1억원×42%=2억1660만원×지방세 1.1배=2억3826만원 최고한계세율 : 이익율 80%×42%×1.1=36.96%

③ 차액증여세	2.5억 ⇒ 1억 × 10% + 1.5억 × 20% = 4천만원	7.5억 ⇒ 1억 × 10% + 4억 × 20% + 2.5억 × 30% = 1.65억원
④ 세금합계	6226만원 + 4천만원 = 1억226만원	2억3826만원 + 1.65억원 = 4억326만원
분석과 판단	① 부모 부동산가액이 낮으면, 전액증여가 낮은세율 적용으로 부담부증여보다 총세금 낮음 ② 부동산가액이 높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와 증여세로 구분해야 총세금 낮음 ③ 과거 오래전 취득으로 취득원가율이 낮으면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한계세율도 높아짐 ④ 부담부증여인 경우는, 해당 전세금 · 차입금을 자녀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해야 함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4일(금)	9월 7일(월)	9월 8일(화)	9월 9일(수)	9월 10일(목)
미 달 러	(USD)	1187.50	1190.20	1187.20	1187.90	1189.60
일 본 엔	(JPY)	1119.28	1119.92	1116.79	1120.50	1120.20
캐 나 다 달 러	(CAD)	904.42	910.70	906.78	896.97	904.98
홍 콩 달 러	(HKD)	153.22	153.56	153.18	153.27	153.48
위 안 화	(CNH)	173.69	173.90	173.77	173.80	173.59
유 로 화	(EUR)	1407.13	1409.61	1403.09	1397.15	1404.62
호 주 달 러	(AUD)	862.78	867.36	864.34	855.58	866.21
싱 가 폴 달 러	(SGD)	869.93	871.97	868.79	865.91	870.3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6.32	286.83	285.56	285.04	285.17

투명 · 민주경영해야 위기 막는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유수 일간지에 "4대 재벌 부채 비율 200%달성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상호출자지분을 상쇄하면 300%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일간지에는 "무책임한 문어발식 경영에 족쇄"라는 기사에 총수1인의 "황제경영"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무능한 2세, 3세의 부의 세습과 경영대물림 관행을 개탄하고 있었다. 한때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모델 국가였던 한국이 IMF를 겪던 시절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한 후 이데오로기 대립과 경쟁이 사라졌다. 자본주의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카지노판에서 머니게임에 몰두하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른 바 핫-머니들의 춤판이 벌어졌다. 싱가폴처럼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시스템을 토대로 한 국가와 기업경쟁력이 탄탄치 못한 곳은 파도처럼 덥치는 금융, 경제위기를 모면키 어렵다. 한국도 고금리, 고물류비, 고임금, 고지대와 고행정비 등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을 염려해 왔다. 한마디로 정경유착의 밀실경영이 판치고 그 결과로 빚더미 위에서 총수1인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확장경영이 IMF를 불러들인 것이다.

참담했던 IMF때와 같은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의 비결은 새삼스러운 것이 있을 수 없다.

첫째, 국가나 기업 모두 빚이 아주 적은 건전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총수들의 전횡과 탐욕에 의한 문어발식 중복 과잉 투자에는 무리한 상호출자, 차입경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항상 자금의 가수요가 존재하고 자금 수요가 공급을 웃돌게 마련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사업 수지가 맞을 리 없다. 더구나 IMF치하의 초고금리에 기업이 얼마나 지탱조차 할 수 있겠는가. 많은 기업들이 순수한 이익보다 자산을 재평가해서 가공 이익을 부풀리는 판이다.

둘째, 투명한 열린 경영, 민주경영이 IMF의 해법이다. 황제경영, 정경유착에 의한 밀실 음모경영이 아니다. 완벽한 정보와 Data를 본사, 대리점, 생산 협력업체와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빠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이 뒤따른다. 더구나 독단적이고 밀실 경영에서 오는 온갖 불만과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

Fila코리아는 항시 경영투명성과 열린 경영을 해 오던 터라 IMF가 닥쳐도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관계자가 모여 터놓고 "민주 대토론회"를 열었다. IMF에 따른 가처분 실질 소득의 축소는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Fila의 생존 역시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작업을 하면 된다는 상황판단이 자연스레 수렴됐다. 그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정착, 완료시킬 수 있었다. 브랜드의 통합과 대리점의 효율적 감축이 뒤따랐다. 불요불급한 F-Line과 Ciesse사업이 중단되었고 구조 조정에 따라 650명에서 350명선으로 인원의 감축도 단행됐다. QRS(Quick Response System)를 도입하여 스피드 경영에 박차를 더욱 가하여 재고를 최소화했다. 광고도 1대 1 마케팅으로 밀착시키는 정책을 강화했다. FILA INTIMO나 FILA Children등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도 시도되었다. IMF치하에서도 대다수 대리점의 존립과 수익성 확보를 지극히 중시했다. 백화점 FILA코너에는 Shopmaster에게 성과급제를 실시하여 Shop당 매출이 급 신장하는 결과도 얻었다. 협력업체에 상품대금을 파격적으로 현금 결재하여 줌으로써 함께 하는 가족의식을 높였다. 자진하여 사장의 연봉을 30%, 임원은 20%, 직원은 15%씩 내렸다. 이태리 본사의 지시가 아니었다. 지금은 연차적으로 모두 회복됐다. 이외에도 많은 당연한(?)소치가 순발력있게 진행되었다. 이는 평소부터 풍부한 자금력과 투명한 열린 민주경영에 의한 신뢰와 스피드 경영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IMF극복을 위한 비결이 아니다.

AnSe Accounting Corporation, The Best Answer
PA(Private Accounting) specialist
안전한 회계세상
안심인 세금관리
안정된 세무회계재경자문

손실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Q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전용 병상 운영, 수가피해 등에 따른 의료수익 손실액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손실금 보상액을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 청구에 의한 입금분을 의료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도 의료행위에 의한 수익으로 보아 의료수익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진료행위에 의한 청구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은 의료수익이라기 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자대가가 교부되지 않는 무상소각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Q 비상장법인이 오랜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가정 시,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후 감자의 방식이 아닌 "이익소각"의 방식(자기주식 및 이익잉여금 차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기존 주주의 의제배당 이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액으로 보는데, 감자대가가 교부되지 않는 무상소각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달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월합세금계산서 발급함

Q 회사에서는 근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 7,000원을 온라인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식비 7,000원에서 5,000원만 사용했을 시 남은 2,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월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출과대계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

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예시를 기반으로
1. 미사용된 포인트 (5,000*30일)를 업체한테 장부나, 쿠폰을 발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2. 월말에 해당 포인트 다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두 가지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한달동안 사용되어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미사용되어 포인트로 적립된 부분은 해당 포인트가 사용되는 시점에 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발급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라면 추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함

Q 당사는 유료고속도로 운영자이며, 고속도로통행용역은 과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회사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 고시를 하여, 정상 과금 후 사후 환불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환불절차는 버스회사가 한국도로공사에 환불을 받아가고 한국도로공사는 환불 후 당사로 환불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질의사항
갑설) 당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노선버스로 환불한 금액을 당사로 청구하는 시점에 노선버스회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환불 후 공급가액은 0이 되므로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을설) 당초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므로, 버스회사로 공급가액만을 환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A 하이패스이용 노선버스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이용시점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로 정상과금후 사후 환불방식하여야 한다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중 직접 이사에 사용된 금액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상담실 백종훈 차장

동일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많은 기업이 일정금액을 이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금액에 대해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실비변상적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임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직원의 이사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

임직원의 지방발령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관련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임수당 중 실제 이사에 사용된 금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인건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만 여비·교통비로 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숙박비 등의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여비·교통비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영수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경우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사비용의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이사비용 지원금액의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그 종류 및 범위(위험수당, 벽지수당, 피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열거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용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등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 중 실제로 이사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업원이 지급 받는 이사보조금 중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인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숙박비나 추가 지원금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 서면1팀-1212, 2005.10.1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46013-673, 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국가	과세방식	기본공제	손익통산 이월공제
미국	이자 · 배당 종합과세 자본이득분리과세	×	○
영국	이자 · 배당 종합과세 자본이득 분리과세	×	○
독일	이자 · 배당 · 자본이득 분리과세	801유로	○
일본	이자 · 배당 · 자본이득 합산 분리과세	×	일부 손익통산 이월공제 가능

화 일몰 연장된 국세 감면 제도

제도	올해 세금감면액	연장 사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조1311억원	중소기업 지원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조9391원	영농 비용 경감
지방 이전 법인세 감면	6833억원	감면한도 신설 후 연장
조합 출자 예탁금 비과세	5646억원	저소득층 농어민 저축 지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3675억원	서민 저축 지원

연금상품 비교

연금저축보험	① 세액공제(연 400만원 한도) ② 55세 이후 종신형 연금 수령 또는 정해진 기간 ③ 정기납입 ④ 원금보장(중도해지 시 원금비보장) ⑤ 불가 ⑥ 적격
연금저축펀드	① 세액공제(연400만원 한도) ② 55세 이후 정해진 기간 ③ 자유적립 ④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비보장 ⑤ 공제한도 초과납 또는 세액공제 미신청 납입금 출금 가능 ⑥ 적격
연금저축신탁	① 세액공제(연 400만원 한도) ② 55세 이후 정해진 기간 ③ 자유적립 ④ 원금보장 ⑤ 공제한도 초과납 또는 세액공제 미신청 납입금 출금 가능 ⑥ 적격
연금보험	① 비과세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 면제 ② 45세 이후 ③ 정기납입 ④ 연금수령 시 납입 원금보장 ⑤ 가입상품별 상이 ⑥ 비적격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용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고 익숙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일반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익숙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달콤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다면 기업의 삶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운도 필요하지만 용기도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자신감과 용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어서', '그건 내 일이 아니라서'와 같이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감과 용기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기업에게 필요한 용기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시장에서 생존이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 즉,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의,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 특정 업무가 습관이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고 방식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론 습관이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구축한 성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현실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라는 단어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계획처럼 일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매번 일희일비[一喜一悲]1 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다가서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기업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 했는가 보다는, 여러 차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691, 2020.02.28

▌질 의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대출 포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고자 함

질의내용

◦ 증여세 및 대출 이전에 따른 과세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758(2018.10.17), 재산상속46014-41(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 상속증여-2758, 2018.10.1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상속46014-41, 2000.01.13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상의 상품권이 아님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582, 2019.12.31

▌질 의

◦ 일반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은 상품을 모바일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매장에서 인증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

◦ 당사는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에 명기된 특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①")과 종이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②")을 판매하고 있음

◦ 모바일상품권②의 교환방식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②를 발행하고 고객은 모바일로 수령한 모바일상품권②를 교환처에 방문하여 바코드인증을 통해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수령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가 모바일 교환권에 명기된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 · 인적시설과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138, 2020.02.21

▌질　의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미리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　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 · 인적 시설과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51, 2020.02.27

▌질　의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을 수행하면서해외 현지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기술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　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 해외계좌 보유한 한국인 '60조원' 신고했다…지난해 인원 24%↑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결과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4.0%(520명)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2.6%(1.6조원) 감소한 수치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9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은 14.4% 늘어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10억원 구간 등 상대적으로 소액 신고자가 증가(214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신고의무가 생긴 것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됐다.

미신고한 경우 대상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됐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연기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최장 1년간 미룬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원래 보유 자산에서 재해로 손실입은 자산의 비중에 따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 자금 조달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관련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개인별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 2020. 9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제도 운영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중소기업창투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특례제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126조의2)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 ('20년 한시 상향)
기타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 운영 중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23만명,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 세부담 경감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 매출액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납부면제자 +34만명,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 세부담 경감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 2020. 9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방 문: ①세무서 방 문 ⇨ ② 민 원 봉사실 ⇨ ③ 서 류 작 성 ⇨ ④ 서 류 접 수 ⇨ ⑤ 검 토

온라인: ① 홈택스 접 속 ⇨ ② 신 청/ 제 출 ⇨ ③ 일반세무 서류신청 ⇨ ④신청 서류작성 ⇨ ⑤ 인터넷 신 청

◉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

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참고로,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6만건, 25조 8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실적(8.31.누계(잠정)) 〉

(단위 : 만건, 조원)

구 분	합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 수	599.6	430.1	105.6	63.9
금 액	25.8	21.1	4.0	0.7

※ 기타 세정지원 실적(상기 통계자료에 불포함) : 61.9만건, 2조원

– 환급금 조기지급(9.3만건, 1.6조원), 조사유예 등(1천건), 고지제외(52.5만건, 4천억원)

○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 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붙임 3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4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19년 소득분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완료

– 국세청, 2020. 9

◉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 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457만 가구에 4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 : '20. 5월 정기신청분, '19. 8 ~ 9월 및 '20. 3월 반기신청 정산분

◉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 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 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 '19.12월 4,207억 원, (하반기분) '20.6월 5,962억 원

◉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 · 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정산) 올해는 '19년 8 ~ 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 상 · 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심사결과확인) 심사 · 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 1. (화)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였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8월 19일, 24일, 28일 3차례에 걸쳐 순차 지급하였습니다.

◉ 신청 현황 및 지급 규모

○ (신청)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입니다.

○ (지급) 총 491만 가구(순가구기준 436만)에 4조 9,724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8월 지급액 4조(정기 및 반기정산분) + 상·하반기분 기지급액 1조(반기)

| ' 19년 소득분 지급가구 및 지급액 |

(만 가구, 억 원)

구 분 (귀속)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9년 소득분	491(436)	49,724	418	43,458	73	6,266
'18년 소득분	473(410)	50,276	388	43,003	85	7,273

* ( )는 순가구 : 단순 합산한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은 가구 차감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가구 기준, 만 원)

구 분		'19년 소득분	'18년 소득분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114	122
	근로장려금	104	110
	자녀장려금	86	85

2. 가구유형별 지급현황

◉ 순 지급가구 및 지급액

○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 2,654억 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독 가구 2조 2,423억 원(45.1%), 맞벌이 가구 4,647억 원(9.3%)을 지급했습니다.

3. 소득유형별 지급현황

◉ 순 지급가구 및 비중

○ 근로소득 274만 가구(62.8%), 사업소득 159만 가구(36.5%)임

-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19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및 정산 결과

1.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19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정산 시에는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특히, 과다지급액은 사후 관리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의 모든 불이익*이 유예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독촉·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2. 정산 결과

◉ 지급 규모

○ '19년 소득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대상은 총 184만 가구로 이 중 135만 가구에게 8,800억 원을 8월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 상 · 하반기분에 대해 기 지급한 금액(1조 169억 원)을 포함한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169만 가구에 1조 8,969억 원입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상 · 하반기분 지급액을 합산한 가구당 연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2만 원입니다.

(만 가구, 억 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정 산	연 간
지급가구	96	133	135	169
총 지급액	4,207	5,962	8,800	18,969
평균 지급액	44만원	45만원	65만원	112만원

◉ 지급시차

○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급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57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

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정기지급일	반기지급일	지급시차 단축
상반기분	'20. 8. 19. (1차분)	'19. 12. 18.	245일
하반기분		'20. 6. 10.	70일

3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하였습니다.

○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하여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 · 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

○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

*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1일 이체건수를 60만 건에서 1일 500만 건으로 확대

○ 정부혁신으로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하여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 지급하였습니다.

* '20. 3월 신청분 지급기한(7. 20.) → 지급(6. 10. / 6. 15. / 6. 19.)
'20. 5월 신청분 지급기한(10. 1.) → 지급(8. 19. / 8. 24. / 8. 28.)

4 심사결과 확인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하였습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 1.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붙임 1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자격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 총소득금액 : 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 독 가 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제외)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15년부터 시행)
○ 신청자격 요건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붙임 2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550만 원[(3,000만 원×45%)+2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5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 원 (70만 원×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5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3,850만 원[(3,000만 원×45%)+2,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 104만 원 (52만 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9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 원의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 3천 원

○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총소득 3,750만 원[(5,000만 원×45%)+1,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7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 (534천 원×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 원의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
④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 원

붙임 3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미담 사례

<사례 #1>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장려금(30대 가장 김OO)

아이를 잃고 공황장애와 과호흡 증후군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 아내를 돌보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대중교통으로 집과 회사를 왕복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 수령한 장려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아내의 치료와 직장생활을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아내의 상태도 호전되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사례 #2> 아이와의 첫 여행을 선물해 준 장려금(40대 한부모가정 김OO)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음.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단둘만의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음.

<사례 #3>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장려금(20대 청년 이OO)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와 단둘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수령한 장려금으로 수험비를 충당하여 자산관리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음. 장려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음.

<사례 #4> 인생의 맑은 날을 알게 해 준 장려금(40대 한부모가정 김OO)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

<사례 #5> 엔젤투자자 같은 장려금(50대 김OO)

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한 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자활센터, 빨래방, 호두과자점에서 일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음. 자녀의 학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음.

붙임 4 -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사례 1. 부적정한 신청 사례

<#1>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 (신청) 조○○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함
▹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함
▹ (결과)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 (신청) 유○○씨와 배우자 임○○씨는 △△상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맞벌이 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상사 대표로부터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결과)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사례 2. 잘못 신청한 사례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 (신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나○○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심사) 어린이집은 비과세 사업으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심사 시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한 사례

▹ (신청) '19.8.2. 이사한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홑벌이 가구, 재산가액 2억원 미만(주택담보 대출 차감)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심사) 은행 대출(부채) 차감분을 포함하여 재산가액 재산정하여 지급제외

붙임 5 - 장려금 제도 효과('19년 장려금 설문조사 결과)

◉ 지급가구는 지급액을 생활비, 명절비용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

〈 지급가구의 장려금 사용처 〉

생활비	추석명절비용	병원비	저축	자녀 교육비 등
70.0%	7.8%	6.9%	5.1%	10.2%

◉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79.2%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장려금 근로유인 효과>

매우 효과 있음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46.4%	32.8%	15.0%	4.3%

〈근로장려금의 근로의욕 제고 사례〉

·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수험비로 사용하여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됨

· 아내의 병환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으나 수령한 장려금으로 중고차를 사서 아내의 치료와 직장생활을 수월하게 병행함

◉ 자녀장려금이 지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하여 46.1%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장려금 출산 장려 및 양육 기여 효과>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잘 모르겠음
46.1%	13.1%	6.0%	34.8%

〈자녀장려금의 자녀 양육 지원 사례〉

· 파산 후 힘든 생활을 영위하던 중 자녀의 학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장려금을 수령하여 생활에 큰 보탬이 됨

2020-202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 한국회계기준원, 2020. 9

Ⅰ.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적용 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동 공개초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제

□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장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기준	주제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Ⅲ.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문단 25.7은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준서가 관련 규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단 25.7에서 공시 생략을 허용하기 보다는 **공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내용)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 문단 25.7을 수정하여 공시 생략 가능 문구를 ' 공시할 수 있다' 로 수정함

나 제29장 중간재무제표

◈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 (개정 사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실29.14에서는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면제 규정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음

□ (개정 내용)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관련 주석 포함)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29.14의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기준에서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 면제** 특례를 적용할

경우, 해당 주식을 원가로 측정하는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특례(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는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를 준용한다)는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의 구분이 모호하게 기술됨

□ (개정 내용)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 **원가법**(취득원가-손상차손누계액)과 **공정가치법**(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준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함(문단 31.6)

○ 문단 31.5의 취지, 문단 31.6 신설 규정, 다른 기준(예: 제10장 유형자산)*과 일관되도록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함(문단 31.5)

* 10.23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Ⅳ.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검토 사항

1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1)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문단 25.7은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준서가 관련 규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단 25.7에서 공시 생략을 허용하기 보다는 **공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 <u>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u>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 **(K-IFRS와 비교)** K-IFRS 제1024호는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다르지 않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에 관한 공시 생략을 허용하고 있음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u>공시하거나,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u>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1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u>공시한다.</u>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 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25.1 이 장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u>약정을 포함한</u>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K-IFRS와 일관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실무적 부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K-IFRS와의 차이를 인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보도자료, '09.12.30.).

②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 문단 25.7을 수정함

○ 현행의 공시 생략 가능 문구를 ' 공시할 수 있다' 로 수정함

③ 개정안

현행	개정(안)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과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할 수 있다.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이미 적용해오던 공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제29장 중간재무제표

(1)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실29.14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동일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면제 규정**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음

○ 직전 연도 중간기간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대부분 동일 기간의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나,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 시 혼란이 있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이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기준적용의견서2003-6**의 내용(해당 비교 표시 방법을 현금흐름표에도 적용하게 함)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회계기준적용의견서 2003-6 '중간재무제표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사항'

5. 의견도출근거

(4)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가 동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던 기업들에게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비교표시하게 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의 비교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누적중간기간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역산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직전 회계연도의 누적중간기간과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동일한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교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표시방법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해당 적용의견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만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자본변동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② 주요 개정 내용

□ 직전 연도의 동일한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교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29.14와 사례6을 개정함

○ 그 밖에, 실29.14와 사례6이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기존 문구도 일부 개정하였음

③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실29.14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실29.14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관련되는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1)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2분기 및 반기)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1분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과 비교표시한다.	(2)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_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한다.
(3)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20X2년 1분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과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과는 비교 표시한다.	(3)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_20X2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
(4) 〈신설〉	(4)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반기)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례 6.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기간은 3개월(분기)단위로 정하여진다.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기간과 비교표시하는 방법은?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1분기	20X2년 반기	20X2년 2분기	20X2년 반기
X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O	비교 표시함	비교 표시함
X	O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함

사례 6.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기간은 3개월(분기)단위로 정하여진다.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기간과 비교표시하는 방법은?

〈손익계산서〉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1분기	20X2년 반기	20X2년 2분기	20X2년 반기
X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O	비교 표시함	비교 표시함
X	O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함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반기	20X2년 반기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비교 표시함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이미 적용해오던 실무지침(면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면제 규정이 과거에도 허용되었고 미래에도 허용된다는 뜻이므로 소급 적용이나 전진 적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음

3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1)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6에 따르면,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해당 자산 **측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해당 투자자산을 측정하고 있음

– 회계처리 부담 때문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가법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적용범위에서 배제

6.2 이 장은 공통사항,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계약에도 적용한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 (제8장 지분법) 관계기업의 정의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순환 논리) 문단 6.2의 적용범위 제외 대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추후 용어 정의의 개선이 필요함

8.3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8.7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이다

□ 특례 적용 기업들이 일관되게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6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자산의 측정 금액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문단 31.6 신설 규정 중 일부는 문단 31.5(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를 준용한다)와도 관련되는데 해당 문단은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구분이 모호하게 기술됨

○ 문단 31.5도 그 취지(원가–손상차손누계액으로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기준(예: 제10장 유형자산)과 일관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 개정 내용

□ (문단 31.6)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장부금액으로 함

①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손상차손은 제6장 준용)

② **공정가치**(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준용)

* (제8장 지분법) 8.9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문단 31.5)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함

*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후략) 10.23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③ 개정안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현행	개정(안)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6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1)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2)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0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xx. xx)'과 문단 1~3을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20년)에서는 문단 31.5, 3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해당사항 없음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0. 9

□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14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②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9.8.)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원인으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함

Ⅱ.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0일 사용 가능)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5일 사용 가능)

Ⅲ.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

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발령 이전에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고용노동부, 2020. 9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집합금지 · 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8.30~9.6.)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집합제한: ①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 집합금지: ①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수도권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 집합금지: ①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 고용유지 조치기간 : '20.8.30(일) ~ 9. 6(일), (방역조치 기간과 동일)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9.30.	10.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67%(2/3)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50%~67%(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20.3.16 ~ '21.3.31) 우선기업 9/10(1일 상한 7만원), 대규모 2/3 ~ 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